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규정**

[2024년 2월 28일 개정]



# 목 차

01.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규약 .....	1
02. 가맹단체 운영 규정 .....	17
03. 가맹 및 탈퇴 규정 .....	31
04. 관리단체 운영 규정 .....	39
05. 지회 운영 규정 .....	45
06.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	53
07.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	59
08.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	67
09.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	73
10.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	79
11.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	83
12.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	89
13.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	93
14.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	99

15. 대회개최·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	109
16. 인사 규정 .....	119
17. 복무 규정 .....	143
18. 보수 규정 .....	169
19. 회계 규정 .....	197
20. 물품관리 규정 .....	217
21. 여비 규정 .....	237
22. 문서관리 규정 .....	245
2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255
24.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	293
25. 차량운영 관리 규정 .....	327
26. 실업팀 운영 규정 .....	347
27. 기부금품 관리 규정 .....	365

# 지회 운영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지회 운영 규정

제정 2014. 01. 16.

개정 2014. 05. 08.

개정 2019. 08. 12.

개정 2022. 12. 13.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지회 운영 규정 제5조 규정과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조에 의거 지회로 설치된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제2조(명칭 및 주소)** 각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 지회로서 지역을 통할 할 수 있는 용어로 ○○○○장애인체육회라 정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며 사무소는 각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제3조(설치목적)**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가맹단체를 통할지도 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 장애인의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각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제3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육성지도 감독
3. 장애인생활체육 교실운영·대회 개최·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
4. 읍·면·동 및 시·도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당 선수단 훈련 및 참가
7.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8.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 체육의 육성
9.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10.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1.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2. 지역의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자문
13.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장애인체육회가 가맹을 승인한 가맹단체의 읍·면·동 지회가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가맹을 승인받은 각 당해 지역 종목별 가맹단체로 조직한다.<개정 2019. 8. 12.>

**제6조(권리)** 각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4. 총회에 이사를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2. 12. 13.>

**제7조(의무)** 각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장애인체육회의 제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보고서,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장애인체육회 제 규정에 준하여 규약을 제정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 및 탈퇴)** ① 각 읍·면·동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가맹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탈퇴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① 이사회의 구성 및 성격은 장애인체육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준한다.

② 집행부의 선임임원 수는 각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실정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선임임원)** ① 임원의 선임, 보선 및 임기는 장애인체육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준한다.

- ②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장에는 읍·면·동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
- ③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다.
- ④ 이사 및 감사는 장애 유형별 분과위원회에서 동일한 비율로 추천하여 구성한다.

**제11조(각종 위원회)** ①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이내,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 ③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제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 제4장 가맹단체

**제12조(가맹자격)**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읍·면·동 지회만이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다. <개정 2019. 8. 12.>

**제13조(기관)**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 가맹단체는 가맹단체별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4조(규약 및 임원인준 등)** ① 읍·면·동 가맹단체의 규약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제정하고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으로 유효하다.

- ② 읍·면·동 가맹단체의 임원은 당해 총회(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나,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③ 임원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결격사유에 저촉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임원인준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 가맹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16조(자산의 구분)** 읍·면·동 장애인체육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회비
4. 장애인체육회 지원금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 수익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1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기금 및 적립금)**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1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장애인체육회와 동일하게 한다.

**제20조(회계감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가맹단체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 제6장 사무국

**제21조(사무국)** ① 읍·면·동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직제 및 규정)** ①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사무국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

## 제7장 보 칙

**제23조(준용)** 읍·면·동 지회 규약과 상이한 경우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장애인 체육회 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 지시한다. <개정 2019. 8. 12.>

**제24조(제한사항)** 본 규정 및 제 규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장애인체육회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부 칙(2014.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